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정	1999.03.01	1차 개정	2009.03.01
2차 개정	2012.02.10	3차 개정	2013.02.01
4차 개정	2014.04.01	5차 개정	2014.08.08
6차 개정	2018.06.01	7차 개정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내·외 표창 및 포상 추천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 및 포상 추천을 위한 심사의 대상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및 본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표창 및 포상 선발 선정기준) 표창 및 포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무를 성실 근면하게 수행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이며, 건설적인 제안을 한 자
4. 학교발전에 협조 및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 장기간 근속하고 퇴직예정인 자로서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학교발전에 노력한 자
6. 기타 다른 공적사항이 뚜렷하고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조(공적심사) 표창 및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표창 및 포상 추천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개정 2022.2.28.>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4.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직원의 공적심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6.1.>

제6조(심사기준) 제3조의 표창 및 포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표창 및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1. 표창(포상) 내용이 표창(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뚜렷하고, 객관성,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대상자의 흠결 사유 유무
4. 기타사항(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단, 공적의 전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가.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 나. 장기 근무자 우선
- 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우선
- 라. 경로사상과 효행정신이 투철한 자 우선

제7조(표창 및 포상의 추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제6조의 심사기준을 통과한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권자에게 제반 서류를 갖추어 총장명의로 추천한다.

제8조(주관부서) 교원 및 직원의 공적심사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